

제338회 정례회
운영상황결과보고

(2016. 11. 08 ~ 12. 14)



전라북도의회
(의사담당관실)

제 338회 정례회

(2016. 11. 08 ~ 12 . 14)

제338회 정례회 개회사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해 계획을 세운 지가 엇그제 같은데 어느덧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정례회를 열게 되어 의미가 새롭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간 마음이 너무 무겁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비선 실세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사태로 인해 국민들이 말로 표현하기 힘든 참담함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인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결자해지 차원의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합니다.

송하진 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현재 전라북도의 재정자립도는 31%대로 전국 최하위 수준입니다.

국가예산 증가율 역시 전국 평균 증가율의 10분의1 수준에 불과해 전북의 재정을 더욱 절망의 벼랑 끝으로 떠밀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기초연금 등 보편적 복지를 위해 필요한 복지예산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지자체의 자체 재원 마련의 길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같은 재정상태라면 간판만 지방자치일뿐 중앙정부가 절대적 실권을 잡는 구조가 고착화 될 우려가 큼니다. 정부가 중앙부처의 방침을 정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방교부금을 삭감하겠다는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도 지방이 예산에 대한 자율성과 독립성을 갖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라북도의회는 앞으로도 전국시도의회와 연계해 지방소비세 확대, 지방교부세율 인상 등 중앙재원의 지방이양을 국회와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촉구해 나가겠습니다.

집행부 역시 어려운 재정여건 극복을 위한 자구책 마련과 함께 지방분권을 법제화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내년도 전북 현안사업 국가예산 확보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총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도내 여야 정치권과 집행부 그리고 우리 의회가 협치를 통해 힘을 모으면 전북의 미래는 밝아지고 도민의 삶의 질 역시 보다 나아질 것입니다.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학교는 우리 아이들이 미래를 준비하고 세상을 살아나갈 능력을 키우는 공간입니다.

저는 교육감께서 연초에 ‘가고 싶은 학교 행복한 교육공동체 플러스’라는 교육 비전을 세우고 지나친 경쟁에 내몰린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꿈과 소질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혁신하려는 다양한 시도들에 대해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교육청의 다양한 정책들이 좋은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도의회 교육위원님들을 비롯한 지역사회 구성원과 충분히 소통하고 협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정부가 학교수의 총량을 정해 두고 그 범위 내에서 관리하게 하는 학교총량제 정책이나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은 지역과 농촌교육을 이끌어갈 구심점을 말살시키는 정책입니다.

특히 농산어촌 소규모학교가 많은 우리 전라북도로서는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는 만큼 정부의 일방적 밀어붙이기식 행정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합니다.

경제논리가 아닌 사람 중심의 관점에서 고품질의 공공교육을 모든 아이들이 받을 수 있도록 국회 등과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에는 행정사무감사와 2017년도 예산안 심의가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자치행정의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정책 집행상의 부당한 사항을 지적하는 등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집행부 감시 기능을 충실히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내년도 예산이 꼭 필요한 사업에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를 꼼꼼히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열악한 지방재정을 건강하게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은 적재적소에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어제는 입동이었습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는데 주변에 도움을 원하는 도민이 없는지, 추운 방에서 밥을 굶고 있는 아이들과 어르신들은 없는지를 꼼꼼하게 살펴서 모두가 행복하게 따뜻하고 행복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6년 11월 8일

전라북도의의회 의장 황 현

목 차

제338회 정례회

I. 집회 및 의사일정

1. 공고 및 집회
2. 회기 및 운영
3. 의 사 일 정

II. 의안접수 및 처리

1. 접 수 현 황
2. 처 리 현 황

III. 민원 접수 및 처리

1. 접 수 현 황
2. 처 리 현 황
3. 위원회별 처리현황
4. 주요 처리사례

IV. 자료요구 및 제출현황

1. 2016년 자료요구 및 제출현황
2. 2016년 위원회별 요구상황
3. 제10대 의회 의원 요구 및 제출현황
4. 제10대 의회 위원회별 요구상황

I . 집회 및 의사일정

1. 공고 및 집회

- 집회 공고 : 2016. 11. 2(수)
- 집회 일자 : 2016. 11. 08(화) 14:00
- 집회 사유
 - 2016년 행정사무감사
 - 2017년도 본예산안 심의
 - 2016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 조례안 및 계류의안 등 심의
 - 상임위원회별 활동

2. 회기 및 운영(제10대)

- 회 기 : 2016. 11. 08 ~ 12. 14(37일간, 2016년 : 130일, 총누계 409일)
- 개의일수
 - 본회의 : 3(연누계 : 30, 총 누계 76)
 - 상임·특별위원

구 분	계	운 영	행정자치	환경복지	산업경제	문화관광 건 설	교 육	특 별
제334회 임사회	64	3	14	8	11	9	10	9
2016 년도	191	15	40	28	31	27	30	20
총 누 계	692	49	145	96	109	117	130	46

3. 의사일정

○ 본회의

일시	부 의 안 건	비고
11.08(화) 14:00	<p style="text-align: center;">《 제1차 본회의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회식 ○ 5분 자유발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지용 의원, 김대중 의원, 백경태 의원, 양용호 의원, 최은희 의원, 최영일 의원, 정호영 의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338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338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3. 교육부 누리과정 묶 교부금 삭감 규탄 결의안 4. 교육부의 퇴행적인 학교신설 행정 규탄 결의안 5. 전북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취소에 따른 긴급대책 촉구 결의안 6. 박근혜 대통령 하야 촉구 결의안 7. 본회의 휴회의 건 	
11.22(화) 11:00	<p style="text-align: center;">《 제2차 본회의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긴급현안질문 2. 2017년도 전라북도 예산안 제안설명 3. 2017년도 전라북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제안설명 4. 2016년도 전라북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5. 2016년도 전라북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제2회 변경계획안 제안설명 6. 2017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제안설명 7. 2017년도 전라북도교육청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 제안설명 8. 2016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9. 역사교과서 국정화 철회 촉구 결의안 10. 본회의 휴회의 건 	
12 14(수) 14:00	<p style="text-align: center;">《 제3차 본회의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분 자유발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성빈 의원, 최진호 의원, 최인정 의원, 박재만 의원, 장명식 의원, 김종철 의원, 양용모 의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사임의 건 2. 제10대 전라북도의회 후반기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3.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 4. 전라북도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전라북도 명예도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전라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전라북도 한옥밀집지역 소방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전라북도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전라북도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일 시	부 의 안 건	비 고
	<p>13. 전라북도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p> <p>14.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p> <p>15.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 검정·시험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p> <p>16. 전라북도 강 살리기 추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p> <p>17. 전라북도 홀로 사는 어르신 공동생활가정 운영 및 지원 조례안</p> <p>18. 전라북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조례안</p> <p>19. 전라북도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p> <p>20. 전라북도 지역전통주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p> <p>21. 전라북도 쌀가공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p> <p>22. 전라북도 해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p> <p>23. 전라북도 중소기업 수출 진흥 조례안</p> <p>24. 전라북도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p> <p>25. 전라북도 한국수화언어 지원 조례안</p> <p>26. 전라북도 동학농민혁명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p> <p>27. 전북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p> <p>28. 전라북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p> <p>29.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p> <p>30. 전라북도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p> <p>31. 전라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p> <p>32. 전라북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p> <p>33. 전라북도 재난관리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p> <p>34. 전라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p> <p>35. 전라북도 건축문화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p> <p>36. 전라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p> <p>37.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 설립·운영 및 지원 조례안</p> <p>38. 전라북도 빈집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p> <p>39. 전라북도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p> <p>40. 전라북도 공동주택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p> <p>41. 전라북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p> <p>42.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p> <p>43. 전라북도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안</p> <p>44. 2016년도 지방교육채 변경 발행 및 2017년도 발행 계획안</p> <p>45. 2017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전북과학교육원 건물 철거 및 전산통합센터 구축】</p> <p>46. 2017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고창교육지원청사 건물 철거 및 개축】</p> <p>47. 2017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고산고등학교 기숙사 등 증축】</p> <p>48. 행정사무감사 불출석에 따른 과태료 부과요구의 건(증인 전라북도교육감)</p> <p>49. 2017년도 전라북도 예산안</p> <p>50. 2017년도 전라북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p> <p>51. 2016년도 전라북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p> <p>52. 2016년도 전라북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제2회 변경계획안</p> <p>53. 2017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p> <p>54. 2017년도 전라북도교육청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p> <p>55. 2016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p> <p>56. PC방 차단 프로그램에 대한 품질개선 및 선정권한의 지방자치단체 위임 촉구 건의안</p> <p>57. 군산 비안도 주민들의 교통권 보장을 위한 점·사용허가 승인 건의안</p> <p>58. 무허가 축사 적법화 정책 개선 촉구 건의안</p> <p>59. 새만금개발청장 경질 촉구 결의안</p>	

○ 상임·특별위원회

위원회	일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고
운 영 위 원 회	11. 8(화) 10:00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7년도 전라북도의회 회기운영계획 협의 결정의 건 ○ 제339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 결정의 건 	
	11. 9(수) 10:00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 	
	11. 22(화) 14:00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6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 ○ 2017년도 예산안 및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행정자치 위 원 회	11. 10(목) 10:00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 자치행정국 - 전북인재육성재단 	
	11. 11(금) 10:00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 대외협력국 - 전북자원봉사센터 - 국제교류센터 	
	11. 14(월) 10:00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 기획관리실 	
	11. 15(화) 10:00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 기획관리실, 공보관, 감사관 - 공무원교육원 	
	11. 16(수) 10:00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 소방본부 - 전북연구원 	
	11. 17(목) 10:00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6년도 미진실국 행정사무감사 	
	11. 18(금) 10:00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6년도 민진실국 행정사무감사 	
	11. 21(월) 10:00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행정국 소관 의안 심사 - 전라북도 명예도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전라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전라북도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전라북도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 ○ 소방본부 소관 의안 심사 - 전라북도 한옥밀집지역 소방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례안 - 전라북도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기획관리실 소관 의안 심사 -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23(수) 10:00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7년도 예산안 및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 기획관리실 	
	11. 24(목) 10:00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7년도 예산안 및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 - 자치행정국, 감사관 	
	11. 25(금) 10:00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7년도 예산안 및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 대외협력국, 공보관 ○ 대외협력국 소관 의안 심사 - 전라북도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전라북도 바르게살기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1. 28(월) 10:00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7년도 예산안 및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 소방본부, 공무원교육원 	
	11. 29(화) 10:00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7년도 예산안 및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11. 30(수) 10:00	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지 의정활동 또는 미진 의안심사 	
환경복지 위 원 회	11. 10(목) 10:00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 환경녹지국 - 전라북도 강 살리기 추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전라북도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11(금) 10:00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 복지여성보건국 - 전라북도 홀로 사는 어르신 공동생활가정 운영 및 지원 조례안 - 전라북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조례안 	
	11. 14(월) 10:00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 모건환경연구원, 새만금추진지단, 전라북도 장애인복지관 	

			- 전라북도보건환경연구원 검정·시험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1. 15(화) 10:00	4	○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 군산의료원, 남원의료원,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11. 16(수) 10:00	5	○ 미진부서 추가감사 및 결과보고서 작성	
	11. 23(수) 10:00	6	○ 2017년도 예산안 및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 환경녹지국	
	11. 24(목) 10:00	7	○ 2017년도 예산안 및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 복지여성복지국	
	11. 25(금)	8	○ 2017년도 예산안 및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 보건환경연구원, 새만금추진지원단, -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 예산안 조정 및 의결	
농산업경제 위원회	11. 10(목) 10:00	1	○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 경제산업국	
	11. 11(금) 10:00	2	○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 전북신용보증재단,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전북테크노파크	
	11. 14(월) 10:00	3	○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 농축수산식품국	
	11. 15(화) 10:00	4	○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 자동차융합기술원, 에코융합섬융연구원, - 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	
	11. 16(수) 10:00	5	○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 농업기술원, 전북테크노파크	
	11. 17(목) 10:00	6	○ 미진업무 감사 및 현지감사	
	11. 21(월) 11:00	7	○ 현지의정활동 - 국제한식조리학교, 동물위생시험소(축산시험장)	
	11. 23(수) 10:00	8	○ 2017년도 예산안 및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 농축수산식품국 - 2017년도 농림수산물발전기금 운용 계획안 - 전라북도 쌀가공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라북도 해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전라북도 지역전통 주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전라북도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11. 24(목) 10:00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7년도 예산안 및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산업국 - 2017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 계획안 - 전라북도 중소기업 수출 진흥 조례안 	
	11. 25(금) 10:00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7년도 예산안 및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기술원 	
	11. 29(화) 14:00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수조정 및 의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 2016년도 농림수산물발전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 2017년도 농림수산물발전기금운용계획안 - 2017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운용계획안 - 2017년도 예산안 ○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문화건설 안전위원회	11. 9(수) 14:00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안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사무감사 증인 추가 채택의 건 ○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민안전실 	
	11. 10(목) 10:00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체육관광국 	
	11. 11(금) 10:00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교통국 	
	11. 14(월) 10:00.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북문화관광재단, 전북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 -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 전라북도문학관 	
	11. 15(화) 10:00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라북도체육회, 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 -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동학농민혁명기념관 	
	11. 16(수) 10:00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북개발공사, 전라북도 교통문화연수원 	

	11. 23(수) 10:00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안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북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전라북도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전라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전라북도 동학농민혁명 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 설립·운영 및 지원 조례안 - 전라북도 한국수화언어 지원 조례안 ○ 2017년도 예산안 및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2017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체육관광국 	
	11. 24(목) 10:00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안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라북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전라북도 재난관리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17년도 예산안 및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2017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민안전실 	
	11. 25(금) 11:00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안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라북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전라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전라북도 건축문화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전라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전라북도 빈집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 전라북도 주택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전라북도 공동주택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 전라북도 한옥 등 건축 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 2017년도 예산안 및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2017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교통국 ○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 ○ 2016 추경예산안 및 2017 예산안 계수조정 	
교 육 위 원 회	11. 9(수) 14:00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라북도교육청 	
	11. 10(목) 10:00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라북도교육청 	
	11. 11(금) 10:00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속기관(전북교육문화회관 외 5개소) 	

			- 전주, 정읍, 김제, 완주교육지원청	
11. 14(월) 10:00	4		○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 직속기관(전북교육연수원 외 5개소) - 군산, 익산, 부안, 고창교육지원청	
11. 15(화) 13:00	5		○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 임실, 순창, 남원, 진안, 무주, 장수교육지원청	
11. 16(수) 10:00	6		○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 전라북도교육청 ○ 의안심사 조례안 등	
11. 21(월) 10:00	7		○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11. 24(목) 10:00	8		○ 2017년도 예산안 및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 전라북도교육청	
11. 28(월) 10:00	9		○ 2017년도 예산안 및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전주, 익산, 군산, 정읍교육지원청 - 남원, 김제, 완주, 진안, 무주주교육지원청 -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교육지원청	
11. 29(화) 10:00	10		○ 2017년도 예산안 및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 전북, 군산, 마한, 남원, 부안, 김제교육문화회관 - 교육연수원, 연구정보원, 과학교육원, 학생교육원, 학생 해양수련원, 유아교육진흥원 ○ 2017년도 예산안 및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12. 1(목) 10:00	1	○ 전라북도 예산안 심사(2017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제안설명 - 의회사무처, 감사관, 기획관리실, 도민안전실	
	12. 2(금) 10:00	2	○ 전라북도 예산안 심사(2017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공보관, 자치행정국, 농축수산물국, 농업기술원	
	12. 5(월) 10:00	3	○ 전라북도 예산안 심사(2017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문화체육관광국, 환경녹지국, 새만금추진지원단	
12. 6(화) 10:00	4		○ 전라북도 예산안 심사(2017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복지여성보건국, 건설교통국, 소방본부, 보건환경연구원	
12. 7(수) 10:00	5		○ 전라북도 예산안 심사(2017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경제산업국, 대외협력국, 공무원교육원	
12. 8(목) 10:00	6		○ 전라북도교육청 예산안 심사(2017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2016년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제안설명 - 감사담당관, 정책공보담당관, 행정국	
12. 9(금) 10:00	7		○ 전라북도교육청 예산안 심사(2017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2016년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교육국, 직속기관	
12. 12(월) 10:00	8		○ 전라북도교육청 예산안 심사(2017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2016년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지역교육지원청	
12. 13(월) 10:00	9		○ 미진부서 예산안 심사, 계수조정, 심사보고서 작성 등 - 전라북도, 전라북도교육청	

Ⅱ. 의안접수 및 처리

1. 접수현황

○ 접수기관 및 의안별

제337회 (2016. 12. 14기준)

구 분	계	조 례				규칙	규정	승인 동의	일반 의안	예산 결산	건의 결의	기타 의안	
		소계	제정	개정	폐지								
총 계	금 회	63	39	16	23			5		7	9	3	
	누 계	957	537	230	297	10	11	1	227	35	105	41	
의 회	소계	금회	39	27	15	12					9	3	
		누계	493	331	201	130		11	1	6		105	39
	의원	금회	36	27	15	12					9		
		누계	450	331	201	130		10		3		93	13
	위원 회	금회	3										3
		누계	43					1	1	3		12	26
도지사	금 회	17	12	1	11			1		4			
	누 계	351	159	25	127	7			172	19			
교육감	금 회	7						4		3			
	누 계	113	47	4	40	3			49	16		1	

2. 처리현황

○ 총 관

제338회 (2016. 12. 14기준)

구 분	접 수	처 리	처 리 내 용						계 류 (미료, 미심사)	
			가 결			부결	폐기	철회		
			원안	수정	대안					
총 계	금회	63	63	42	9				3	
	누계	957	933	786	123		14	10	24	
조 례 안	소계	금회	39	42	33	6				3
		누계	537	516	410	99		2	5	20
	의회	금회	27	29	22	4				3
		누계	331	313	249	59			5	18
	도지사	금회	12	12	11	1				
		누계	159	158	121	35		1	1	1
교육감	금회		1		1					
	누계	47	46	40	5		1		1	
규 칙 안	금회									
	누계	11	10	10				1		
규 정 안	금회									
	누계	1	1	1						
승인동의안	금회	5	5	5						
	누계	227	226	207	6		9	4	1	
일 반 의 안	금회									
	누계									
예산결산안	금회	7	7	4	3					
	누계	35	35	16	17		2	1		
건의결의안	금회	9	9	9						
	누계	105	103	101	1		1		2	
기 타 의 안	금회	3	3	3						
	누계	41	41	41						

○ 위 원 회

구 분	회 부										처 리				미 료	미 심 사	
	계	조 례	규 칙	규 정	승 인 동 의	일 반 의 안	예 산 결 산	건 의 결 의	기 타 의 안	계	가 결		부 결	철 회			
											원 안	수 정					
총 계	금 회	51	39			5		7			51	42	9			3	
	누 계	820	531	11	1	222		15	17	3	796	661	107	15	13	24	
운 영 위 원 회	금 회																
	누 계	46	30	11	1				4		41	38	1	1	1	5	
행 정 자 치 위 원 회	금 회	12	11			1					11	10	1			1	
	누 계	163	117			33			2	1	161	139	21	1		2	
환 경 보 지 위 원 회	금 회	5	5								5	4	1				
	누 계	117	97			17			3		113	93	17	1	2	4	
산 업 경 제 위 원 회	금 회	4	4			29					5	4	1				
	누 계	138	66			69			3		134	112	14	7	1	4	
문 화 관 광 건 설 위 원 회	금 회	16	16								17	16	1				
	누 계	153	95			54			4		151	127	21		3	2	
교 육 위 원 회	금 회	7	3			4					8	4	2			2	
	누 계	167	116			49		1		1	160	134	17	3	6	7	
특 별 위 원 회	금 회	7						7			7	4	3				
	누 계	36						34	1	1	36	18	16				

○ 본 회 의(직접부의)

구 분	부 의									처 리				미 료	미 상 정	
	계	조 례	규 칙	규 정	승 인 동 의	일 반 의 안	예 산 결 산	건 의 결 의	기 타 의 안	계	가 결		부 결			철 회
											원 안	수 정				
총 계	금회	12						9	3	12	12					
	누계	134	1			6		92	37	134	131	2		1		

○ 본 회 의(의 결)

구 분	부 의									처 리				미 료	미 상 정	
	계	조 례	규 칙	규 정	승 인 동 의	일 반 의 안	예 산 결 산	건 의 결 의	기 타 의 안	계	가 결		부 결			철 회
											원 안	수 정				
총 계	금회	63	39			5		7	9	3	63	42	9		3	
	누계	957	537			227		35	105	41	957	883	123	14	10	24

제10대 의안처리 현황

○ 기관 및 의안별 <접수>

제338회(2016. 12 14기준)

구 분	계	조 례				규칙	규정	승인 동의	일반 의안	예산 결산	건의 결의	기타 의안
		소계	제정	개정	폐지							
총 계	957	537	230	297	10	11	1	227		35	105	41
의 회	소 계	493	331	201	130		11	1	6		105	39
	의 원	450	331	201	130		10		3		93	13
	위 원 회	43					1	1	3		12	26
전라북도지사	351	159	25	127	7			172		19		
전라북도교육감	113	47	4	40	3			49		16		1

○ 의안 및 처리유형별

제338회(2016. 12 14기준)

구 분	접 수	처 리	처 리 내 용						계 류	
			가 결			부결	폐기	철회		
			원안	수정	대안					
총 계	957	933	786	123		14		10	24	
조 례 안	소 계	537	516	410	99		2		5	20
	의 회	331	312	245	59				2	18
	도 지 사	159	158	121	35		1		1	1
	교 육 감	47	46	40	5		1			1
규 칙 안	11	10	10					1		
규 정 안	1	1	1							
승 인 동 의 안	227	226	207	6		9		4	1	
일 반 의 안										
예 산 결 산 안	35	35	16	17		2		1		
건 의 결 의 안	105	103	101	1		1			2	
기 타 의 안	41	41	41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교육감		제 출 일 자	2016. 6. 30
위원회 심사	소 관 위 원 회	교육위원회	회 부 일 자	2016. 7. 5
	의 결 일 자	2016. 11. 29	심 사 결 과	수정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3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6.12.14	심 의 결 과	수정가결
이 송 일 자	2016.12.15		이 송 기 관	교육감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 시·도의회 교육전문인력의 업무지원조직과 사무직원을 두는 근거 법률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9조의3(시·도의회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지원)이 신설됨에 따라 전라북도 의회사무처 내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 처리를 지원할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배치 근거를 마련하고,
- 유아교육 확대 및 과학교육의 체계화된 지원을 위하여 교육전문직원의 증원 수요가 발생되었기에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전라북도 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조정하고자 하며,
- 위기학생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되었던 Wee센터 상담인력 사업이 2016. 2. 29.자로 종료되었기에 이를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전라북도 의회사무처 내 업무지원조직과 사무직원을 두는 정원에 대한 관련 근거 마련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9조의3(공포 2015.6.22., 시행 2015.12.23.)(안 제1조)
- 나. 전라북도의회 사무처 정원 조항 내용 수정(안 제2조제2호)
 - 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회 및 사무처 정원 : 9명⇒전라북도의회 사무처 정원 : 9명
- 다. 전라북도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4,082명을 4,084명으로 개정(안 제2조)
 -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의 교육전문직원 정원 297명을 2명 증가한 299명으로 개정(안 제2조제3호)

전라북도 한국수화언어 지원 조례안

제 출 자	국주영은강영수정호윤 의원 외 10인		제 출 일 자	2016. 8. 25
위원회 심사	소 관 위 원 회	환경복지위원회	회 부 일 자	2016. 8. 31
	의 결 일 자	2016. 11. 23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3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6. 12. 14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6. 12. 15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 이 조례는 한국수화언어가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농인의 고유한 언어임을 밝히고, 한국수화언어의 발전 및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농인과 한국수화언어사용자의 언어권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

□ 주요내용

- 가.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함(제2조)
- 나. 한국수화언어 지원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제3조)
- 다.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4조)
- 라. 농인들의 가족에 대한 지원을 규정함(제5조)
- 마. 한국수화언어의 날과 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7조와 제8조)

전라북도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 출 자	이해숙 의원 외 7인	제 출 일 자	2016. 8. 25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농산업경제위원회	회 부 일 자
	의 결 일 자	2016. 11. 23	심 사 결 과
본회의 심의	회 차	3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6. 12. 14	심 의 결 과
이 송 일 자	2016. 12. 15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 전북도민의 미디어 활용 능력을 높이고 마을공동체미디어의 지원을 통한 민주적인 주민소통과 공동체 문화의 활성화를 위한 전라북도 마을공동체미디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마을공동체미디어, 운영단체, 중간지원조직의 개념 규정함(안 제2조)
- 나.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동, 운영단체를 지원대상으로 규정함(안 제3조)
- 다. 육성·지원 계획 수립, 센터 설치, 재정지원 등을 규정함(안 제5조)
- 라. 마을공동체미디어 지원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 규정함(안 제6조)
- 마. 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10조)
- 바. 사업비의 반환 등 기타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11조)

전라북도보건환경연구원 검정시험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도지사		제 출 일 자	2016. 10. 31
위원회 심사	소 관 위 원 회	환경복지위원회	회 부 일 자	2016. 11. 3
	의 결 일 자	2016.11.24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3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6. 12. 14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6. 12. 15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검사의뢰 규칙」(총리령) 개정에 따라 동 규칙의 제명을 관련 조례 각 조항에 반영하고
- 행정조직 개편에 따라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부서신설 등 변경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검사의뢰 규칙의 개정에 따라 동 규칙의 제명을 개정(안 제5조)
- 나. 행정조직 개편에 따라 행정기구 설치 관련 조례 개정으로 별지 서식 변경내용 개정(안 제2조, 별지 제4호 서식)

전라북도 동학농민 혁명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제 출 자	장학수 의원 외 13인		제 출 일 자	2016. 10. 31
위원회 심사	소 관 위 원 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회 부 일 자	2016. 11. 3
	의 결 일 자	2016. 11. 23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3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6. 12. 14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6. 12. 15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은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선양계승하기 위해 설립된 역사문화 시설로서, 수탁자는 운영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도모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하나 기념관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조례는 이를 달성하는 데 미비한 점을 내포하고 있음
- 이에 해당 조례의 전부개정을 통하여 동학농민혁명기념관 운영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제4조(관람 및 입장시간) 전시관 입장시간을 관람시간 종료 1시간 전에서 30분전으로 변경
- 나. 제9조(자문위원회) 자문위원회 위원에 전라북도의회의원과 정읍시장 및 정읍시의회로부터 추천받은 1인을 추가
- 다. 제10조(자문위원회 기능) 자문위원회가 수행하는 기능에 회계 결산사항 및 다음 연도 사업계획의 검토 및 자문기능을 추가
- 라. 제24조(유물의 감정) 외부감정기관 유물감정을 의무화하고 이에 대한 기준 추가
- 마. 제28조(유물의 관리) 소장유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유물대장의 작성 및 비치사항을 추가
- 바. 제32조(운영의 위탁) 기념관 위탁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변경

2016년도 지방교육채 변경 발행 및 2017년도 발행 계획안

제 출 자	교육감		제 출 일 자	2016. 10. 31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회 부 일 자	2016. 11. 3
	의 결 일 자	2016. 11. 29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3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6. 12. 14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6. 12. 15		이 송 기 관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 2016년도 지방교육채 변경 발행

- 2016년도 교육부 보통교부금 확정교부(2016.3.22.)에 따라 당초 지방교육채 발행 계획을 변경하여 전라북도의회 제331회 임시회(2016.4.22.)의 의결을 받았으나,
- 학교신설 등 지방교육채 발행 대상 사업 중 연도 내에 자금지출이 가능한 사업비는 금년도에 발행하고, 자금지출 수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발행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지방교육채 이자 절감 및 불용액을 최소화 하고자 함

○ 2017년도 지방교육채 발행

- 2017년도 교육부 보통교부금 예정교부(2016.10.21.) 에 따른 교육환경개선 사업비를 지방교육채로 신규 발행하고,
- 2016년도 이월 대상 지방교육채를 2017년도에 발행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2016년도 지방교육채 변경 발행

(단위: 백만원)

당 초(A)		변 경(B)		증 감 (B-A)	차입선	상환방법	
사업명	금액	사업명	금액				
학교신설	45,436	학교신설	37,075	△8,361	금융채	5년거치 10년상환	
교육환경개선	77,609	교육환경개선	77,609	-	공공자금 관리기금		
교부금 보전	학교신설	9,357	학교신설	4,623	△4,734		금융채
	교육환경개선	13,479	교육환경개선	13,479	-		
	소 계	22,836	소 계	18,102	△4,734		
합 계	145,881		132,786	△13,095			

○ 2017년도 지방교육채 발행

(단위 : 백만원)

사업내역		금 액	차입선	상환방법	비 고
구 분	사업명				
2017년도 신규	교육환경개선(2017년)	85,966	미 정	미 정	
2016년도 이월	학교신설(2016년)	8,361	금융채	5년거치 10년 상환	
	교부금보전(학교신설, 2016년)	4,734			
합 계		99,061			

2017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전북과학교육원 건물 철거 및 전산통합센터 구축】

제 출 자	교육감		제 출 일 자	2016. 10. 31
위원회 심사	소 관 위 원 회	교육위원회	회 부 일 자	2016. 11. 3
	의 결 일 자	2016. 11. 21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3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6. 12. 14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6. 12. 15		이 송 기 관	교육감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 현 전주시 인후동 소재 전북과학교육원(1975.5.2. 개원)의 신축 이전사업이 2016.11월 완료되면 동 기관이 익산시 부송동으로 이전 예정에 있는바, 이전 후 현 전북과학교육원 건물을 “전라북도교육청 전산통합센터”로 활용하고자 전문기관에 건물 정밀안전진단을 의뢰한 결과 구조체의 내력 저하로 D등급(재난위험시설)으로 판정되어 안전사고가 우려되어 철거가 불가피한 상황이며
- 철거 후 동 부지에 본청(총무과, 미래인재과) 및 교육연구정보원, 교육지원청, 공공도서관으로 분산되어 있는 정보시스템을 통합적으로 운영·관리함으로써 정보자원의 효율성·보안성 등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교육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라북도교육청 전산통합센터”를 구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전북과학교육원 건물 철거 및 전산통합센터 구축 (단위 : m², 천원)

계획구분	소재지	용도	면적	예정가액	취득(처분)사유
처분 (건물철거)	전주시 덕진구 안덕원로 191	사무실 (과학교육원)	4,972.38	1,118,271	기관신축이전 및 재난위험시설 판정
취득 (건물신축)		사무실 (전산통합센터)	2,479	8,433,012	기부채납

2017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고창교육지원청사 건물 철거 및 개축】

제 출 자	교육감		제 출 일 자	2016. 10. 31
위원회 심사	소 관 위 원 회	교육위원회	회 부 일 자	2016. 11. 3
	의 결 일 자	2016. 11. 21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3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6. 12. 14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6. 12. 15		이 송 기 관	교육감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 고창교육지원청의 본관 건물은 3층 건물로서 1,2층은 1980년도 신축, 3층은 1991년도 증축되어 현재 사용연수는 최장 36년으로 내구 연한(45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나
- 최근 청사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 과정에서 건물 구조체의 이상이 발견되어 전문기관에 건물 안전진단을 의뢰한 결과 철거를 요하는 D급 판정(구조체의 안전성 저하 및 재료의 심각한 노후화 현상)을 받아 더 이상 행정용으로 활용하기 어려워 용도폐지(행정재산→일반재산)한 후
- 재난 예방 및 소속 직원들의 업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현 건물을 철거하고 그 장소에 건물을 개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고창교육지원청사 건물철거 및 개 (단위 : m², 천원)

계획구분	소 재 지	용도	면적	예정가액	취득(처분)사유
처분 (건물철거)	고창군 고창읍 교촌리 76-4	사무실	1,535.04	298,104	재난위험시설 판정 용도폐지 및 철거
취득 (건물신축)		사무실	3,902.05	9,704,585	개축

의안번호 900

2017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고산고등학교 기숙사 증축】

제 출 자	교육감		제 출 일 자	2016. 10. 31
위원회 심사	소 관 위 원 회	교육위원회	회 부 일 자	2016. 11. 3
	의 결 일 자	2016. 11. 29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3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6. 12. 14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6. 12. 15		이 송 기 관	교육감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 고산고등학교는 2016년 7월 대안교육 특성화고등학교로 지정되어 2018학년도 부터 대안교육을 희망하는 신입생을 도내 학생 대상으로 모집하게 된 바
- 대안교육을 받기위해 입학하는 학생들의 숙박 편의 및 기숙 학생들의 안정적인 생활지도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1조에 따른 대안교육특성화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한 체험공간(바리스타, 제과 제빵, 페브릭 작업 등)확보를 위하여 각각 기숙사, 사택, 작업장 카페 등 시설을 증축하고
- 그 밖에 현 식생활관은 경량철골조 샌드위치 판넬로서 내구연한(10년)이 3년 경과된 노후화된 건물이며, 앞으로 기숙사 운영에 필요한 1일 3식이 가능한 시설 로의 식생활관을 증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고산고등학교 기숙사 등 증축

(단위 : m², 천원)

계획구분	소재지	용도	면적	예정가액	취득사유
증축	완주군 고산면 고산천로 551-23	기숙사	2,160	5,450,702천원	특성화고등학교 지정에 따른 증축
		식생활관	290		
		사택	150		
		작업장카페	370		
		합계	2,970		

전북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도지사		제 출 일 자	2016. 10. 31
위원회 심사	소 관 위 원 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회 부 일 자	2016. 11. 3
	의 결 일 자	2016. 11. 23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3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6. 12. 14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6. 12. 15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 전북문화관광재단의 명칭을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으로 변경하고,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조항 및 잘못된 문구 등을 어문 규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전북문화관광재단의 명칭 변경(조례제명 및 안 제1조)
 - (현행) 전북문화관광재단 ⇨ (변경)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 나. 상위법령(출자·출연법) 위배조항 개정(안 제18조)
 - 결산서 제출시기 :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 3개월
 - 다. 잘못된 문구 등을 어문 규정에 맞게 정비(안 제14조)
 - (현행) 적립 이외에 타 목적 ⇨ (변경) 적립 외의 다른 목적

전라북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도지사		제 출 일 자	2016. 10. 31
위원회 심사	소 관 위 원 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회 부 일 자	2016. 11. 3
	의 결 일 자	2016.11.25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3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6. 12. 14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6. 12. 15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 건축법 시행령 개정 등에 따른 소규모 건축물의 감리체계 개선과 관련한 공사 감리자 모집 및 지정에 관한 기준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건축위원회 회의록 공개 대상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건축위원회 회의록에 대한 공개 대상 명확화(안 제13조제2항)
- 나. 공사감리자의 모집 및 등록절차 등을 정함(안 제21조)

전라북도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도지사		제 출 일 자	2016. 10. 31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회 부 일 자	2016. 11. 3
	의 결 일 자	2016. 11. 25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3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6. 12. 14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6. 12. 15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 글로벌시대를 맞이하여 국제교류협력 증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재외동포 등에게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고향방문 등의 지원 및 포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국제교류협력 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재외동포 등에 대한 보조금 등의 지원 근거 일부개정 및 포상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13조 ~ 제14조의2)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도지사		제 출 일 자	2016. 10. 31
위원회 심사	소 관 위 원 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회 부 일 자	2016. 11. 3
	의 결 일 자	2016. 11. 23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3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6. 12. 14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6. 12. 15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 전북문화관광재단으로 관리 전환된 문화전당 분원(전라북도 예술회관)을 삭제하며 법률의 위임없이 조례로 주민의 권리제한과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고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전북문화관광재단으로 관리 전환된 문화전당분원(전라북도예술회관)은 삭제(안 제1조 내지 제7조, 제10·11·12조, 제15조, 제17조)
- 나. 법률의 위임없이 조례로 주민의 권리제한과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 삭제(안 제4조제2항, 제9조, 제12조제3항)
- 다. 위탁기간연장심사위원회 구성시 성별 비율 문안 삽입(안 제8조제2항)
 -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라. 공정성·신뢰성·중립성 확보를 위해 위원 중 이해당사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규정 신설(국민권익위 부패영향평가지침)(안 제8조의2항)

전라북도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도지사		제 출 일 자	2016. 10. 31
위원회 심사	소 관 위 원 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회 부 일 자	2016. 11. 3
	의 결 일 자	2016. 11. 23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3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6. 12. 14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6. 12. 15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제안이유

-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불합리한 내용을 개선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고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작은도서관 등록의 시설기준을 상위법령에 맞게 완화 (제5조제2항)
- 나. 법령상 근거없이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허용하고 있는조항 삭제(제11조제2항)

전라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도지사		제 출 일 자	2016. 10. 31
위원회 심사	소 관 위 원 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회 부 일 자	2016. 11. 3
	의 결 일 자	2016. 11. 23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3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6. 12. 14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6. 12. 15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 전라북도 문화예술진흥기금이 전북문화관광재단으로 이관됨에 따라 전라북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기금조성, 기금의 관리·운용, 전라북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 심의위원회 등에 관한 조례 내용 삭제 필요
- 전라북도 문화예술진흥위원회 기능 중 전라북도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에 대한 사항 및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계획 및 시행등의 자문·심의 사항 추가 필요

□ 주요내용

- 가. (조항 삭제) 제3조(기능) 2호
 - 전라북도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
- 나. (조항 추가) 제3조(기능)
 -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에 대한 사항(안 제3조 2호)
 -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계획 및 시행 등의 자문·심의 사항(안 제3조 3호)
- 다. (전부삭제) 제5장 및 제6장
 - 제5장 전라북도 문화예술진흥기금(제16조 ~ 제21조)
 - 제6장 전라북도 문화예술진흥기금지원 심의위원회(제22조 ~ 제25조)
- 라. (상위법령 위배사항 개정)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별지 1, 6, 7호 서식)

전라북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조례안

제 출 자	도지사		제 출 일 자	2016. 10. 31
위원회 심사	소 관 위 원 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회 부 일 자	2016. 11. 3
	의 결 일 자	2016. 11. 24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3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6. 12. 14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6. 12. 15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정(‘16. 5. 31일 시행)에 따른 사회재난 관련 기존 조례가 지원 대상 및 범위 등이 서로 달라 이원화되어 있어
- 사회재난 피해자 등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관리와 지원기준 확대 및 간접지원 추가를 위하여 본 조례 제정

□ 주요내용

- 가. (지원대상) 특별재난지역외의 지역 사회재난 중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운영된 재난
 - 원인·책임 규명이 지연되거나 원인 제공자가 보상 자력이 없는 사회재난으로 시장·군수가 판단하여 도지사에게 지원 요청
- 나. (지원내용) 구호금(사망,실종,부상), 생계비, 주거비, 구호비(주택피해 등), 교육비, 세금감면 및 유예, 자금융자(농업,어업인 등), 주택 복구자금 융자 등
- 다. (재원부담) 도·시군 각각 50%부담
 - 사회재난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과 피해수습 지원
- 라. (지원결정) 전라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심의 의결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도지사		제 출 일 자	2016. 10. 31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회 부 일 자	2016. 11. 3
	의 결 일 자	2016. 11. 21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3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6. 12. 14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6. 12. 15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개정(시행 '17. 1.1.)으로 공기업 특별회계로 운영되던 지역개발기금이 자치단체 일반 기금으로 전환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 지역개발채권의 매입대상 및 매입기준을 완화하여 도내 기업과 도민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채권 발행 축소를 통해 지방채무의 증가를 억제하여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으로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가 기금으로 운용토록 변경됨에 따라 지역개발기금을 설치함(안 제2조)
- 나. 비영업용 자동차의 신규등록 및 이전등록 시 채권 매입기준을 완화하고, 영업용 자동차의 신규등록 및 이전등록, 건설기계등록은 채권매입대상에서 제외함(안 제6조제1항 별표 1)
 - (신규) 2,000cc미만 6~8% → 4~6%, 2,000cc이상 12%→10% / (이전) 3~6% → 2~5%
- 다. 지역개발기금의 상환 이율에 대한 기준을 명시함(안 제7조)
 - (현행) 상환이율은 규칙으로 정함 → (개정) 한국은행 기준금리 적용하되 연복리,100분의 50범위 내에서 규칙으로 가감
- 라. 지역개발기금 회계관직 공무원을 지정함(안 제16조)
- 마.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심의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7조)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 출 자	도지사		제 출 일 자	2016. 10. 31
위원회 심사	소 관 위 원 회	행정자치위원회	회 부 일 자	2016. 11. 3
	의 결 일 자	2016. 11. 21	심 사 결 과	수정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3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6. 12. 14	심 의 결 과	수정가결
이 송 일 자	2016. 12. 15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 행자부 지침('16.3월)에 따라 자체 조직진단을 통해 신규 행정수요 및 지역현안 수요 중심으로 기능·인력 재배치(기준인력의 3% 수준)
- 감염병 연구 전담조직 신설과 소방인력 확충 등 국가시책 이행을 위한 정원증원 및 직제 개편
- 혁신도시추진단 한시기구 상시기구화, 인권센터 및 저출산대책팀 신설 등 신규 행정수요 반영

□ 주요내용

가. 기 구

- 본 청 : 12실·국·본부 56관·과·단 → 12실·국·본부 55관·과·단·센터 (△1과)
- 직 속 : 3원 10서(변동 없음)
- 사업소 : 11사업소 → 9사업소(△2사업소)

나. 정 원

- 전라북도 정원의 총수 및 집행기관의 정원 조정(안 제63조)
 - 정원의 총수 : 3,757명 → 3,812명 (증 55명*)

〈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정부개정조례 수정안〉

원 안	수 정 안
<p>제12조(복지여성보건국) 복지여성보건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복지정책·저출산대책·저소득지원·자활사회서비스에 관한 사항 2. 여성정책·여성권익·청소년·아동보육에 관한 사항 <p>제13조(건설교통국) 건설교통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 략) 2. 도로교통·도로계획·도로시설·대중교통·철도공항에 관한 사항 3. 항만·물류·하천계획·하천관리에 관한 사항 	<p>제12조(복지여성보건국) 복지여성보건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복지정책·저소득지원·자활지원·보육정책에 관한 사항 2. 여성정책·여성권익·청소년·출산아동에 관한 사항 <p>제13조(건설교통국) 건설교통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과 같음) 2. 대중교통·물류·도로교통·도로계획·도로시설에 관한 사항 3. 항만·철도공항·하천계획·하천관리에 관한 사항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p> <p>①~② (생략)</p> <p>③ 전라북도 사무위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제1항의 별표1 성과명란 중 “생활안전과”를 “안전정책관”으로, “도로공항과”와 “물류교통과”를 “도로교통공항과”로 한다.</p> <p>④~⑬(생략)</p> <p>⑭ 전라북도 물류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9조 2항 “물류교통과장”을 “항만하천과장”으로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p> <p>①~② (현행과 같음)</p> <p>③</p> <p>----- ----- ----- -----, “도로공항과”와 “물류교통과”를 “교통물류도로과”로 한다.</p> <p>④~⑬(현행과 같음)</p> <p>⑭</p> <p>----- -----</p> <p>“물류교통과장”을 “교통물류도로과장”으로 한다.</p>

의안번호 910

전라북도 재난관리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도지사		제 출 일 자	2016. 10. 31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회 부 일 자	2016. 11. 3
	의 결 일 자	2016. 11. 24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3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6. 12. 14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6. 12. 15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 상위법령에 규정한 재난관리기금 용도 포함

- 주요내용
 - 가.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4조 제8호에 규정한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을 기금용도에 포함

전라북도 명예도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도지사		제 출 일 자	2016. 10. 31
위원회 심사	소 관 위 원 회	행정자치위원회	회 부 일 자	2016. 11. 3
	의 결 일 자	2016. 11. 10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3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6. 12. 14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6. 12. 15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 도정 발전을 위해 시행중인 명예도지사 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위촉 규모를 확대(문화·경제·농업·대외협력 등)하여 도정 활성화 도모
- 위촉대상 및 임기 연임 규정을 수정하여 덕망과 인격을 갖춘 사람이 명예도지사로 위촉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명예도지사 추천 규정 신설 (안 제4조)
- 나. 명예도지사 위촉대상 수정 (안 제5조)
 - (현행) 전라북도 출신인사로 타시도 및 외국에서 300명이상 회원으로 구성된 광역단위 향우회장 중 명망있는 인사
 - (변경) 도의 위상을 높이고 도정발전에 크게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람
- 다. 부득이한 경우 의회 사후승인 규정 신설 (안 제5조)
- 라. 임기 연임규정 수정 (안 제6조)
 - (현행)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변경)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의안번호 912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

제 출 자	도지사		제 출 일 자	2016. 10. 31
위원회 심사	소 관 위 원 회	행정자치위원회	회 부 일 자	2016. 11. 3
	의 결 일 자	2016. 11. 10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3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6. 12. 14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6. 12. 15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 전라북도 발전에 공로가 기대되는 타 지역 인사를 대상으로 우리 道 발전에 폭 넓은 협조 및 지원체계 구축을 위하여 전라북도 명예도민증을 수여하기 위해 의회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함.

※ 근거 :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조례 제3조 제1항

□ 주요내용

가. 대 상 자 (5명)

성 명	생년월일 (나이)	출신지 · 학력	배치부서
곽현진	90.05.10 (27)	경기도 광주시 광주경화여고, 건국대(행정)	문화예술과
김세진	90.12.21 (27)	서울시 서울예일여, 서강대(정치외교)	새만금개발과
양철호	85.02.12 (32)	서울시 서울고, 서강대(경영)	자치행정과
이 슬	91.01.04 (26)	서울시 서울잠실여고, 서울대(정치외교)	정무기획과
오다운	90.06.23 (27)	서울시 대일외고, 고려대(경제)	예산과

전라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송지용 의원 외 7인		제 출 일 자	2016. 10. 31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회 부 일 자	2016. 11. 3
	의 결 일 자	2016. 11. 10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3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6. 12. 14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6. 12. 15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규정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심의회 당연직 위원을 각 실·국장, 소방본부장, 기획관중에서 임명하도록 반영(안 제4조 제2항)
- 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맞게 관련 근거 조항 반영(안 제5조제2항 제1호)
- 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사용료·대부료·매각대금·교환차금·변상금·과오납금 등을 분할 납부하는 경우 연3퍼센트 이자율을 적용하던 것을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반영(안 제35조~안 제63조의2)
- 라.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대상자 범위에 “5·18 민주유공자”도 포함되도록 “「국가보훈 기본법」에서 정한 국가보훈대상자”로 관련 법 근거를 변경. (안 제38조제2항)
- 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2015.2.16.)에 따라 감정평가 의뢰 대상의 확대(안 제66조)

전라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최영일 의원 외 7인		제 출 일 자	2016. 10. 31
위원회 심사	소 관 위 원 회	행정자치위원회	회 부 일 자	2016. 11. 3
	의 결 일 자	2016. 11. 25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3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6. 12. 14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6. 12. 15		이 송 기 관	원안가결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라 정비구역등의 추진상황으로 보아 지정목적은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시장·군수는 정비구역등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세부기준을 정함(안 제9조의2 신설)
- 나. 조합임원이 6개월 이상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시장·군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를 전문조합관리인으로 선정하여 조합임원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14조의2 신설)
- 다.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관한 정보공개의 방법과 시기를 정함(안 제28조의2 신설)

전라북도 지역전통주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 출 자	최영일 의원 외 7인		제 출 일 자	2016. 10. 31
위원회 심사	소 관 위 원 회	농산업경제위원회	회 부 일 자	2016. 11. 3
	의 결 일 자	2016. 11. 23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3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6. 12. 14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6. 12. 15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 전라북도 지역전통주산업 육성으로 해당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임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문화와 정을 담은 전통주를 계승·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하기 위함

□ 주요내용

- 가. “술”, “지역전통주” 용어 규정(안 제2조)
- 나. 도지사는 지역전통주산업 육성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전통주 소비촉진에 노력(안 제3조)
- 다. 도지사는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아 우수 지역전통주를 선정할 수 있으며, 홍보 활동 실시(안 제4조)
- 라. 도지사는 지역전통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각종 공식행사에서 이를 우선 이용하도록 노력(안 제5조)
- 마. 지역전통주산업 육성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전라북도 한옥밀집지역 소방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 출 자	김대중 의원 외 7인		제 출 일 자	2016. 10. 31
위원회 심사	소 관 위 원 회	행정자치위원회	회 부 일 자	2016. 11. 3
	의 결 일 자	2016. 11. 21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3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6. 12. 14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6. 12. 15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 한옥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주거형태지만 그 보존과 관리에 있어 큰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음. 이에 한옥을 잘 보존하고 한옥에 살고 있는 사람의 안전과 소방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한옥밀집지역에 대한 소방안전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한옥밀집지역의 소방안전관리 및 지원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안 제2조)
- 나. 한옥밀집지역의 화재경계지구 지정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4조)
- 다. 한옥밀집지역 내 관계인에 대한 소방훈련 및 교육에 대하여 규정 함(안 제5조)
- 라. 한옥밀집지역 내 한옥에 대한 소방설비 지원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6조)

전라북도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 출 자	김대중 의원 외 7인		제 출 일 자	2016. 10. 31
위원회 심사	소 관 위 원 회	행정자치위원회	회 부 일 자	2016. 11. 3
	의 결 일 자	2016. 11. 10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3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6. 12. 14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6. 12. 15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 저학력·비문해 성인의 기초생활 능력 향상을 위한 문자해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비문해자들의 학습권과 평생교육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문해교육의 대상을 도내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 학령기 동안 교육을 받지 못한 비문해자로 함(안 제3조)
- 나. 문해교육의 기본 원칙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 균등한 교육 기회 보장, 비문해자 인권 존중을 정함(안 제4조)
- 다. 문해교육 진흥을 위한 도지사의 시책 마련 임무를 규정함(안 제5조)
- 라. 문해교육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추진주체 및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 마. 문해교육단체의 공공시설 이용 요청에 대해 사용 협조 의무를 둠(안 제8조)

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최영일 의원 외 7인		제 출 일 자	2016. 10. 31
위원회 심사	소 관 위 원 회	행정자치위원회	회 부 일 자	2016. 11. 3
	의 결 일 자	2016. 11. 21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3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6. 12. 14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6. 12. 15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 「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기금 보조사업에 대한 준용 규정이 명시되지 않아 기금 보조사업의 집행·관리 기준이 미비하므로, 「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기금 보조사업의 적용을 명시함으로써 기금 보조사업 집행·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 (안 제2조)

- 지방보조금 정의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에서 교부하는 자금을 포함

의안번호 920

전라북도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김종철 의원 외 10인	제 출 일 자	2016. 10. 31
위원회 심사	소 관 위 원 회	행정자치위원회	회 부 일 자
	회 부 일 자	2016. 11. 21	심 사 결 과
본회의 심의	회 차	3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6. 12. 14	심 의 결 과
이 송 일 자	2016. 12. 15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제안이유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범위를 명확히 하고,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인 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주요내용

- 가. 조례명 개정
- 나. 포상금 등 지급신고 대상 시설 및 불법행위 (안 제2조)
- 다. 신고 방법 (안 제3조)
- 라. 포상금 등의 지급 (안 제6조)

전라북도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송성환 의원 외 9인		제 출 일 자	2016. 10. 31
위원회 심사	소 관 위 원 회	행정자치위원회	회 부 일 자	2016. 11. 3
	의 결 일 자	2016. 11. 10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3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6. 12. 14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6. 12. 15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제안이유

- 계약심의위원회의 서면심의 운영을 규정하고 있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으므로 시행령에 규정하지 않은 서면심의를 조례에 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여 서면심의 규정을 조례에서 삭제 함

주요내용

- 가. 계약심의위원회 서면심의 조항 삭제(안 제5조의2)

전라북도 강 살리기 추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정호윤 의원 외 7인		제 출 일 자	2016. 10. 31
위원회 심사	소 관 위 원 회	환경복지위원회	회 부 일 자	2016. 11. 3
	의 결 일 자	2016. 11. 10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3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6. 12. 14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6. 12. 15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전라북도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전라북도와 도민의 책무를 강화하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활동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라북도 강 살리기 추진단의 지원근거를 법률에 의거하여 마련하기 위함

□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을 정확히 수정(안 제1조)
- 나. 관련법 개정에 따른 민간단체 운영에 필요한 비용 지원근거 마련(안 8조)
- 다. 규정된 사항 이외의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함(안 14조)

전라북도 홀로 사는 어르신 공동생활가정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제 출 자	최훈열·김현철 의원 외 6인		제 출 일 자	2016. 10. 31
위원회 심사	소 관 위 원 회	환경복지위원회	회 부 일 자	2016. 11. 3
	의 결 일 자	2016. 11. 11	심 사 결 과	수정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3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6. 12. 14	심 의 결 과	수정가결
이 송 일 자	2016. 12. 15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 전북도내 노인인구 증가 추이에 따라 홀로 사는 어르신의 비율도 증가하는 추세임.
- 홀로 사는 어르신들의 고독사·치매·우울증 등을 예방하고 노년의 활기찬 생활 지원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인공동생활가정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홀로 사는 어르신 공동생활가정에 대한 정의(안 제2조)
- 나. 공동생활가정에 대한 지원 및 계획수립(안 제3조~ 안 제5조)
- 다. 공동생활가정의 지원계획에 관한 자문·심의(안 제6조)
- 라. 공동생활가정 지원 중단 사유(안 제7조)

전라북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조례안

제 출 자	이성일 의원 외 7인		제 출 일 자	2016. 10. 31
위원회 심사	소 관 위 원 회	환경복지위원회	회 부 일 자	2016. 11. 3
	의 결 일 자	2016. 11. 11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3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6. 12. 14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6. 12. 15		이 송 기 관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제안이유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14호(별표15의2제9호)관련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를 시·도 또는 시·군·구 조례로 위임함.
- 이에 「전라북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조례」 제정을 통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함.

주요내용

- 가. 음식판매자동차 용어 정의(안 제2조)
- 나.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다른 법률관계(안 제3조~제5조)

전라북도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 출 자	최훈열, 정호운, 김영배, 이정일, 이호근 박재만, 국주영, 은이상, 현 의원		제 출 일 자	2016. 10. 31
위원회 심사	소 관 위 원 회	환경복지위원회	회 부 일 자	2016. 11. 3
	의 결 일 자	2016. 11. 10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3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6. 12. 14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6. 12. 15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 산불을 예방하여 산림을 건강하고 체계적으로 보호함으로써 국토 보전 및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도지사에게 매년 지역산불방지 연도별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안 제4조)
- 나. 산불방지의 연도별대책의 체계적 추진과 산불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마련하기 위하여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운영토록 함(안 제5조)
- 다. 산불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산불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토록 함(안 제6조)
- 라. 산불방지 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산불방지협의회를 구성·운영토록 함(안 제7조)
- 마. 산불피해를 최소화 하고 도민의 의식향상을 위해 홍보 및 행사활동을 하도록 함(안 제8조)
- 바. 산불방지를 위해 필요한 인력, 장비 등에 대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 사. 산불방지 활동에 우수한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포상하도록 함(안 제10조)

전라북도 쌀가공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 출 자	백경태 의원 외 17인		제 출 일 자	2016. 10. 31
위원회 심사	소 관 위 원 회	농산업경제위원회	회 부 일 자	2016. 11. 3
	의 결 일 자	2016. 11. 23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3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6. 12. 14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6. 12. 15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 도내 생산되는 쌀의 새로운 수요개발과 소비를 촉진하고 쌀가공품의 품질향상, 쌀가공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주요내용

- 가. 쌀가공산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도의 역할을 규정함(안 제3조)
- 나. 쌀가공산업 활성화 지원과 체계적인 시책 추진을 위해 지원계획을 수립·시행을 의무화함(안 제4조)
- 다. 쌀가공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에 관한 규정(안 제5조)
- 라. 쌀가공사업의 지원대상 선정 등에 관한 규정(안 제6조)
- 마. 쌀 이용 촉진 및 쌀가공산업 활성화를 위해 홍보전시관, 유통센터 또는 전문판매점의 설치·운영의 지원에 관한 규정(안 제7조, 제8조)
- 바. 쌀가공품의 품질향상 및 경쟁력 촉진을 위한 품평회 및 경연대회 개최 및 지원에 관한 규정(안 제9조)
- 사. 쌀가공품의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규정(안 제10조)
- 다. 쌀가공산업 관련 시책에 공로가 큰 사람, 법인, 단체 등에 포상 가능하도록 함(안 제11조)

전라북도 해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 출 자	양용호 의원 외 15인		제 출 일 자	2016. 10. 31
위원회 심사	소 관 위 원 회	농산업경제위원회	회 부 일 자	2016. 11. 3
	의 결 일 자	2016. 11. 23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3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6. 12. 14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6. 12. 15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 전라북도 해양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발전시킴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주요내용

- 가. 해양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시책을 마련해야 할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나. 해양산업의 체계적인 육성·발전을 위해 해양산업육성계획 수립을 의무화 함(안 제4조)
- 다. 해양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과 필요시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5조, 제11조)
- 라. 해양산업 육성과 관련한 정책 조정 등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 설치 및 운영과 위원장의 직무 및 비밀준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 마. 해양산업 육성 및 발전에 공적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에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2조)

전라북도 중소기업 수출 진흥 조례안

제 출 자	강용구 의원 외 13인		제 출 일 자	2016. 10. 31
위원회 심사	소 관 위 원 회	농산업경제위원회	회 부 일 자	2016. 11. 3
	의 결 일 자	2016. 11. 24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3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6. 12. 14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6. 12. 15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 전라북도 중소기업의 수출 진흥과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 내 중소기업에 대한 체계적 육성과 대외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중소기업 수출 진흥을 위해 해외 진출과 해외시장 개척 등에 필요한 전라북도 통상진흥 시책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를 명시함(안 제4조)
- 나. 전라북도 중소기업 수출 종합계획 및 세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다. 중소기업 수출 진흥 등에 관한 자문기구인 수출지원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함(안 제7조)
- 라.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수출기반 조성 및 해외시장 개척 등에 관한 지원 사항들을 규정함(안 제9 ~ 11조)
- 마. 정부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WTO 규정 등의 무역협정 및 조약 등에 위배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됨을 명시함(안 제12조)
- 바. 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중소기업 전문기관이나 단체를 통해 대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안 제13조)
- 사. 수출증대에 기여도가 높은 기관 단체 및 수출업체 등 유공자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함(안 제14조)

의안번호 929

전라북도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안

제 출 자	최인정·장명식·강병진·최영규 의원 외 7인		제 출 일 자	2016. 10. 31
위원회 심사	소 관 위 원 회	교육의위원회	회 부 일 자	2016. 11. 3
	의 결 일 자	2016. 11. 21	심 사 결 과	수정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3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6. 12. 14	심 의 결 과	수정가결
이 송 일 자	2016. 12. 15		이 송 기 관	교육감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제안이유

- 전라북도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주요내용

- 가. 출석인정 대안학교시설에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그 밖의 지원을 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함(안 제4조)
- 나. 보조금 집행 등 운영전반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 감독 등을 실시하는 사항을 정함(안 제5조)

교육부 누리과정 몫 교부금 삭감 규탄 결의안

제 출 자	장명작이해숙최인정강병진조병서 최영규최영일 의원 외 2인		제 출 일 자	2016. 10. 31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직접부의	회 부 일 자	
	의 결 일 자		심 사 결 과	
본회의 심의	회 차	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6. 11. 8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6. 11. 9		이 송 기 관	청와대등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전라북도의회는 교육부가 교부금에서 누리과정 몫 예산을 삭감해 교부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를 훼손하는 행태임을 거듭 지적한다.
- 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교육부가 법률 위반과 지방자치를 무시한 교부금 삭감 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과 누리과정 예산을 국비로 지원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교육부의 누리과정 몫 교부금 삭감이 철회될 때까지 각 시도의회, 교육청, 교육단체, 학부모 등과 연대해 투쟁해 나갈 것임을 밝히며 결의안을 채택함.

교육부의 퇴행적인 학교신설 행정 규탄 결의안

제 출 자	최인정이해숙양용모 의원 외 13인		제 출 일 자	2016. 10. 31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직접부의	회 부 일 자	2016. 11. 8
	의 결 일 자		심 사 결 과	
본회의 심의	회 차	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6. 11. 8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6. 11. 9		이 송 기 관	청와대 등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교육부는 전국적인 학생 수 감소만을 이야기하지만, 우리 교육현실은 OECD 평균에 크게 못 미치는 교육예산과 학급당 학생 수가 많다. 교육부 지금 노력해야 할 것은 충분한 교육예산 확보와 적정규모 학생 수 배치를 위한 근본적인 노력이다.
- 전라북도의회는 끼워 팔기 식 학교신설 정책은 행정을 민주적 절차를 통한 효율증대로 이해하기 보다는 군대식 목표달성으로 접근하는 것으로 매우 위험한 행태임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한다. 아울러, 우리 전라북도의회는 끼워 팔기 식 학교신설 개선될 때까지 각 시도의회, 교육청, 교육단체, 학부모 등과 연대해 투쟁해 나갈 것임을 밝히며 결의안을 채택함.

전라북도 건축문화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장학수 의원 외 9인		제 출 일 자	2016. 10. 31
위원회 심사	소 관 위 원 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회 부 일 자	2016. 11. 3
	의 결 일 자	2016. 11.25	심 사 결 과	수정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3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6. 12. 14	심 의 결 과	수정가결
이 송 일 자	2016. 12. 15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 전라북도 건축문화상’ 선정과정에서 그동안 명확한 심사기준 없이 심사위원 개인의 주관적 기준에 따라 선정함으로써 심사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지 못함
- 따라서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위해 심사기준을 신설하고, 심사절차 등의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전라북도 건축문화의 질 높은 성장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배치 및 건축계획의 독창성과 합리성, 도시경관의 기여도 등 건축문화상 응모 부문별 심사기준을 신설하여 심사과정상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함(별표)
- 나. 심사위원이 작품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심사 3일 전에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함(안 제11조)
- 다. 전체적으로 한국어문규정에 의거하여 맞춤법을 개정함

전라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한완수 의원 외 12인		제 출 일 자	2016. 10. 31
위원회 심사	소 관 위 원 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회 부 일 자	2016. 11. 3
	의 결 일 자	2016. 11. 25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3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6. 12. 14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6. 12. 15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 그동안 법률의 위임 없이 지주 이용간판 표시를 금지한 조례 규정을 삭제하여 옥외광고물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전자게시대의 설치 지역 및 수평거리를 조례로 정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법령명칭을 변경
- 나. 지주 이용간판 표시를 금지한 조례 규정을 삭제(안 제10조제1항제1호, 제10조제1항제2호)
- 다. 지주 이용 간판 중 전자게시대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안 제10조 제4항)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 설립·운영 및 지원 조례안

제 출 자	최은희 의원 외 14인		제 출 일 자	2016. 10. 31
위원회 심사	소 관 위 원 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회 부 일 자	2016. 11. 3
	의 결 일 자	2016. 11. 23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3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6. 12. 14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6. 12. 15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 전주세계소리축제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전주세계소리축제 조직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업계획 및 예산의 운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정관의 기재사항을 규정(안 제4조)
- 나. 사업계획의 제출 및 결산의 시기와 방법을 규정(안 제8조)
- 다. 수시보고와 검사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안 제9조)

전라북도 빈집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제 출 자	장학수, 백경태 의원 외 10인		제 출 일 자	2016. 10. 31
위원회 심사	소 관 위 원 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회 부 일 자	2016. 11. 3
	의 결 일 자	2016. 11. 25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3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6. 12. 14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6. 12. 15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 농·어촌지역의 급격한 인구감소와 도심 공동화로 인하여 방치된 빈집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빈집은 붕괴, 화재 등 안전상의 위험은 물론 각종 범죄의 온상이며, 미관상 주변 환경에 악영향을 초래함으로써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
- 따라서 빈집을 공공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내 빈집실태를 조사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빈집정비 및 활용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주요내용

- 가. 빈집관리활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3조)
- 나. 빈집실태조사에 대한 사항을 규정(안 제4조)
- 다. 빈집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5조)
- 라. 정보의 제공 및 지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6조)
- 마. 빈집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7조)
- 바. 빈집활용사업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8조)

전라북도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한완수·김대중 의원 10인	제 출 일 자	2016. 10. 31
위원회 심사	소 관 위 원 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회 부 일 자
	의 결 일 자	2016. 11. 25	심 사 결 과
본회의 심의	회 차	3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6. 12. 14	심 의 결 과
이 송 일 자	2016. 12. 15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 정부에서는 그동안 「주택법」에 너무 많은 내용을 다루고 있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겨남에 따라 「주택법」에 있는 내용을 「주거급여법」, 「주택도시보증법」 등으로 분법화 하고 있으며, 특히 주거복지에 대한 기본법으로 주거정책의 기초를 이루는 내용을 담은 「주거기본법」이 시행(2015.12.23시행)되고, 「주택법」이 전부개정(2016.08.12.시행)됨
- 따라서 그동안 이전의 「주택법」에 위임된 내용만을 조례로 규정하던 것을 개정된 「주택법」 및 신설된 「주거기본법」의 위임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전면 개정을 추진함

□ 주요내용

- 가. 전라북도 10년 단위 주거종합계획 및 연도별 주거종합계획에 관한 사항(안 제3조, 안 제4조)
- 나. 전라북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안 제14조)
- 다. 전라북도 주거복지센터 설치 등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 라. 주택건설사업 등에 대한 임대주택의 건설 비율에 관한 사항(안 제17조)

전라북도 공동주택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박재완 의원 외 8인		제 출 일 자	2016. 10. 31
위원회 심사	소 관 위 원 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회 부 일 자	2016. 11. 3
	의 결 일 자	2016. 11. 25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3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6. 12. 14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6. 12. 15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 현재 공동주택의 관리·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보다 체계적·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기존 「주택법」에서 다루던 내용을 분법하여 「공동주택관리법」(2016.08.12. 시행)으로 규정하고 있음
- 전라북도에서는 기존 「주택법」에 의거하여 제정된 「전라북도 공동주택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2015.02.27.제정·시행)를 일부개정하여 신규로 제정된 「공동주택 관리법」의 내용에 따라 그에 위임된 사항과 추가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 특히 「공동주택 관리법」 제93조에 위임된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감사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인 공동주택 관리 감사를 실시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제명을 변경함
- 나. 상위법명을 변경함(주택법→공동주택관리법)
- 다. 전라북도 공동주택관리 감사 절차에 대한 사항(안 제14조 ~ 안 제17조)
- 라. 전라북도 공동주택관리 감사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사항(안 제18조)
- 마. 감사 결과 보고 및 사후조치에 대한 사항(안 제19조 ~ 안 제22조)

전라북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

제 출 자	최은화송지용 의원 외 6인		제 출 일 자	2016. 10. 31
위원회 심사	소 관 위 원 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회 부 일 자	2016. 11. 3
	의 결 일 자	2016. 11. 25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3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6. 12. 14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6. 12. 15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2016년 7월 7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해당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규정이 필요함
- 또한 최근 건축자산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지역 고유의 건축자산을 활용한 관광활성화사업, 도시재생사업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짐에 따라 전라북도 건축자산의 실태 파악 및 이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와 지원이 요구되고 있음

□ 주요내용

- 가. 전라북도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나. 전라북도 건축자산 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다. 건축자산 유지 및 보수 관련 사업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라. 우수건축자산의 관리에 필요한 기술 및 소요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마. 전라북도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 바. 전라북도 건축자산 진흥구역 협의체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 사.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전북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취소에 따른 긴급대책 촉구 결의안

제 출 자	최훈열 의원 외 7인		제 출 일 자	2016. 11. 21
위원회 심사	소 관 위 원 회	직접부의	회 부 일 자	
	의 결 일 자		심 사 결 과	
본회의 심의	회 차	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6. 12. 14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6. 12. 15		이 송 기 관	청와대 등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보건복지부는 10월 20일 중앙응급의료위원회를 개최하여 소아환자 응급치료 및 전원관련 사항에 대해 전북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을 취소하고 6개월 후 재지정 여부를 고려하겠다는 처분을 결정했음.
- 그러나 응급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서비스(essential medical services)라는 점에서 국가책임을 높여야 하는 부분 중의 하나이며 어떤 경우에도 최종책임은 국가에게 있음.
- 보건복지부는 전라북도에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운영 중인 곳은 전북대학교병원 단 한 곳뿐인데 대체기관 지정이나 어떤 대안마련도 없이 전북대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 취소를 결정, 취소 시 도내 중증응급환자 진료체계, 응급이송체계, 재난의료 지원체계가 무너진다는 것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정임.
- 따라서 「응급의료법」에 보장된 도민의 생명보호를 위해서는 권역응급의료센터를 대체할 기관을 지정하든지 지정취소를 즉시 철회해야 할 것임.
- 또한 전북권역응급의료센터는 이번 중증소아외상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그 어떤 미사여구로도 변명할 수 없는 사안이며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마땅히 사법적·윤리적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 대책을 도민들에게 제시해야 할 것임

박근혜 대통령 하야 촉구 결의안

제 출 자	박재만 의원 외 12인		제 출 일 자	2016. 11. 21
위원회 심사	소 관 위 원 회	직접부의	회 부 일 자	
	의 결 일 자		심 사 결 과	
본회의 심의	회 차	32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6. 11. 22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6. 11. 23		이 송 기 관	청와대 등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 현재까지 밝혀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현 정권하에서 국가권력이 개인의 사적 이익 추구를 위해 악용되었음을 보여줌, 국민을 위해 쓰여져야 할 국가권력을 개인의 재산 축적을 위해 동원하고, 국민을 위해 필요한 일을 하도록 맡겨진 국가조직은 물론 기업과 대학을 자신들의 소유물처럼 훼손한 행위는 선의였다고 해서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님.
- 이것은 우리 헌법 제1조가 선언한 ‘민주공화국’의 파괴행위임, 국가가 국민의 의사에 따라 선출된 권력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운영되며 국가기구가 국민의 공적 이익을 위해 존재하여야 한다는 공화국 이념을 무너뜨린 것임.
- 또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우리 헌법 제119조제2항이 천명한 ‘경제의 민주화’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헌법질서 파괴행위임, 기업과 전경련은 권력의 요구에 순응하여 거액의 돈을 출연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자신이 원하던 각종 규제완화와 특혜 조치, 특별사면 등 대가를 받아갔음, 이는 ‘정경유착’의 전형적인 모습으로서 ‘포괄적 뇌물’의 수수행위임.
-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은 국가를 대표하는 원수로서 민주공화국의 헌법을 수호할 책무(헌법 제66조제2항)를 지닌 박근혜 대통령에게 있으며, 헌정질서를 무너트린 현 집권 여당의 책임을 엄중히 묻고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함.

2017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제 출 자	교육감		제 출 일 자	2016. 11.11
위원회 심사	소 관 위 원 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 부 일 자	2016. 12. 1
	의 결 일 자	2016. 12. 12	심 사 결 과	수정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3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6. 12. 14	심 의 결 과	수정가결
이 송 일 자	2016. 12. 15		이 송 기 관	교육감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 2017년도 교육과정의 원활한 추진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따라 2017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의결을 받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예산안 규모

- 세입		(단위 : 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전년예산	증 감 액	
합 계	2,831,446,968	2,706,227,172	125,219,796	
이 전 수 입	2,645,298,658	2,484,650,552	160,648,106	
자 체 수 입	31,572,346	28,327,768	3,244,578	
차 입	99,062,089	133,170,808	△34,108,719	
기 타	55,513,875	60,078,044	△4,564,169	
- 세출		(단위 : 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전년예산	증 감 액	
합 계	2,831,446,968	2,706,227,172	125,219,796	
유아및초중등교육	2,711,542,287	2,570,542,079	141,000,208	
평생·직업교육	7,121,256	6,839,131	282,125	
교육일반	112,783,425	128,845,962	△16,062,537	

2017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 수정예산안

제 출 자	교육감		제 출 일 자	2016. 12. 12
위원회 심사	소 관 위 원 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 부 일 자	2016. 12. 12
	의 결 일 자	2016. 12. 12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3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6. 12. 14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6. 12. 15		이 송 기 관	교육감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 2017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제출 이후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이 제정됨에 따라 어린이집 무상보육료를 편성하기 위하여 2017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수정예산안 의결을 받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수정예산 규모

- 세입		(단위: 천원)		
구 분	수정 예산안	기제출 예산안	증 감 액	
합 계	2,862,146,968	2,831,446,968	30,700,000	
이 전 수 입	2,675,998,658	2,645,298,658	30,700,000	
자 체 수 입	31,572,346	31,572,346		
차 입	99,062,089	99,062,089		
기 타	55,513,875	55,513,875		
- 세출		(단위: 천원)		
구 분	수정 예산안	기제출 예산안	증 감 액	
합 계	2,862,146,968	2,831,446,968	30,700,000	
유아및초중등교육	2,742,242,287	2,711,542,287	30,700,000	
평생·직업교육	7,121,256	7,121,256		
교육일반	112,783,425	112,783,425		

2017년도 전라북도교육청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

제 출 자	교육감	제 출 일 자	2016. 11. 11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 부 일 자	2016. 12. 1
	의 결 일 자	2016. 12. 12	심 사 결 과
본회의 심의	회 차	3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6. 12. 14	심 의 결 과
이 송 일 자	2016. 12. 15	이 송 기 관	교육감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 기금 운용의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제5호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2017년도 전라북도교육청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을 수립·작성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기금운용 총 규모

(단위 : 천원)

기 금 명	'16년도말 조성액(a)	'17년도 기금운용계획		17년도말 조성액 (d=a+b-c)
		수입계획(b)	지출계획(c)	
학교안전공제및 사고예방기금	2,731,719	3,187,527	3,099,403	2,819,843

* 수입계획에 이월금, 지출계획에 예비비 미포함

○ 2017년 기금운용계획 총괄

(단위 : 천원)

수 입 계 획							
계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공제료	기타사업 수익	이자수익	과년도 수입	이월금
	보조금	공제료					
5,919,246	1,561,347	1,305,987	51,026	78,000	46,211	144,956	2,731,719
지 출 계 획							
계	공제급여	학교폭력피해학생 지원사업	예방 사업비	인력 운영비	기본 경비	예비비	
5,919,246	2,446,710	177,884	19,918	415,525	39,366	2,819,843	

2016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 출 자	교육감		제 출 일 자	2016. 11. 11
위원회 심사	소 관 위 원 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 부 일 자	2016. 12. 1
	의 결 일 자	2016. 12. 12	심 사 결 과	수정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3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6. 12. 14	심 의 결 과	수정가결
이 송 일 자	2016. 12. 15		이 송 기 관	교육감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 2016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중앙정부이전 수입 등 재원변동에 따른 예산조정 및 필요한 재정 수요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2016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을 받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 세입		(단위: 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 총액	기정예산액	증 감 액	
합 계	2,902,779,536	2,784,509,006	118,270,530	
이 전 수 입	2,654,946,634	2,529,743,496	125,203,138	
자 체 수 입	38,828,553	32,665,536	6,163,017	
차 입	132,785,183	145,880,808	△13,095,625	
기 타	76,219,166	76,219,166	0	
- 세출		(단위: 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 총액	기정예산액	증 감 액	
합 계	2,902,779,536	2,784,509,006	118,270,530	
유아및초중등교육	2,750,381,338	2,656,752,325	93,629,013	
평 생 · 직 업 교 육	7,110,491	7,109,895	596	
교 육 일 반	145,287,707	120,646,786	24,640,921	

2017년도 전라북도 예산안

제 출 자	도지사		제 출 일 자	2016. 11. 11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 부 일 자	2016. 12. 1
	의 결 일 자	2016. 12. 12	심 사 결 과	수정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3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6. 12. 14	심 의 결 과	수정가결
이 송 일 자	2016. 12. 15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 삼락농정, 전북도 토탈관광, 탄소산업 등 민선 6기 도정 핵심과제 추진과 안전전북 구현 등 전북발전을 견인하기 위한 2017년도 전라북도 예산(안)을 편성하고 지방자치법 제 127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 주요내용

가. 2017년도 전라북도 예산(안) 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5,146,627,495	198,943,558
일 반 회 계	4,679,741,319	184,936,975
특 별 회 계	466,886,176	14,006,583
농 어 촌 주 택 사 업	9,990,114	299,703
의 료 급 여 기 금	388,749,765	11,662,491
동 부 권 특 별 회 계	30,132,716	903,981
지역자원시설특별회계	38,013,581	1,140,407

2017년도 전라북도 예산 수정예산안

제 출 자	도지사	제 출 일 자	2016. 12. 12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 부 일 자	2016. 12. 12
	의 결 일 자	2016. 12. 12	심 사 결 과
본회의 심의	회 차	3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6. 12. 14	심 의 결 과
이 송 일 자	2016. 12. 15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제안이유

- 2017년도 전라북도 예산안에 대하여 국고보조금 변동 등 예산(안) 제출 이후 수정사유 발생으로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주요내용

가. 2017년 수정예산(안) 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세입·세출 예산액	기정예산(안)	증 감 액
합 계	5,158,534,783	5,146,627,495	11,907,288
일 반 회 계	4,691,648,607	4,679,741,319	11,907,288
특 별 회 계	466,886,176	466,886,176	-
농 어 촌 주 택 사 업	9,990,114	9,990,114	-
의 료 급 여 기 금	388,749,765	388,749,765	-
동 부 권 특 별 회 계	30,132,716	30,132,716	-
지 역 자 원 시 설 특 별 회 계	38,013,581	38,013,581	-

2017년도 전라북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제 출 자	도지사		제 출 일 자	2016. 11. 11
위원회 심사	소 관 위 원 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 부 일 자	2016. 12. 1
	의 결 일 자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3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6. 12. 14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6. 12. 15		이 송 기 관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 최대화 및 운용의 투명성, 공공성 확보와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융자성 기금의 지역경제 활성화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2017년도 전라북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수립·작성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 주요내용

가. 2017년 기금운용계획 총괄(안)

(단위 : 천원)

구 분	수 입 계 획									
	계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 회 수	예탁금 원금회수	예치금 회 수	예수금	이자수입	기타수입
14개 개별기금	665,086,888 (666,524,600)	36,359,000 (36,359,000)		130,000,000 (130,000,000)	106,011,344 (106,011,344)	41,484,000 (34,480,600)	332,577,506 (332,577,506)		18,254,038 (16,695,150)	401,000 (401,000)

구 분	지 출 계 획									
	계	비용자성 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인 력 운영비	기본 경비	예탁금	예치금	차 입 금 원리금상환	예 수 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14개 개별기금	665,086,888 (666,524,600)	19,889,075 (19,889,075)	41,400,000 (41,400,000)				437,279,181 (437,279,181)	143,525,244 (143,525,244)	22,953,388 (14,391,100)	40,000 (40,000)

※ 합계란의 ()는 통합관리기금에서 발생한 수입·지출을 제외한 '16년 실제 순수입·순지출을 나타내는 순계규모

2016년도 전라북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 출 자	도지사		제 출 일 자	2016. 11. 11
위원회 심사	소 관 위 원 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 부 일 자	2016. 12. 1
	의 결 일 자	2016. 12. 12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3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6. 12. 14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6. 12. 15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 삼락농정, 전북도 토탈관광, 탄소산업 등 민선 6기 도정 핵심과제 추진과 안전전북 구현 등 전북발전을 견인하기 위한 2016년도 전라북도 예산안을 편성하고 지방자치법 제 130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 주요내용

가. 2016년도 전라북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비고
합 계	5,947,191,982	5,609,392,310	337,799,672
일 반 회 계	5,018,170,416	4,777,917,257	240,253,159
특 별 회 계	929,021,566	831,475,053	97,546,513
기 타 특 별 회 계	482,472,692	478,650,138	3,822,554
농 어 촌 주 택 사 업	13,903,590	12,531,362	1,372,228
의 료 급 여 기 금	398,848,023	398,728,023	120,000
동 부 권 특 별 회 계	30,126,716	30,064,186	62,530
지 역 자 원 시 설 특 별 회 계	39,594,363	37,326,567	2,267,796
공 기 업 특 별 회 계	446,548,874	352,824,915	93,723,959
지 역 개 발 기 금	446,548,874	352,824,915	93,723,959

2016년도 전라북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

제 출 자	도지사		제 출 일 자	2016. 12. 12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 부 일 자	2016. 12. 12
	의 결 일 자	2016. 12. 12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3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6. 12. 14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6. 12. 15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 2016년도 전라북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중앙재원 변동 등 예산(안) 제출 이후 수정사유 발생으로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 주요내용

가. 2016년도 전라북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기정예산액	증 감 액
합 계	5,947,731,828	5,947,191,982	539,846
일 반 회 계	5,018,710,262	5,018,170,416	539,846
특 별 회 계	929,021,566	929,021,566	-
기 타 특 별 회 계	482,472,692	482,472,692	-
농어촌주택사업	13,903,590	13,903,590	-
의료급여기금	398,848,023	398,848,023	-
동 부 권	30,126,716	30,126,716	-
지역자원시설	39,594,363	39,594,363	-
공기업특별회계	446,548,874	446,548,874	-
지역개발기금	446,548,874	446,548,874	-

2016년도 전라북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제2회 변경계획안

제 출 자	도지사		제 출 일 자	2016. 11. 11
위원회 심사	소 관 위 원 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 부 일 자	2016. 12. 1
	의 결 일 자	2016. 12. 12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3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6. 12. 14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6. 12. 15		이 송 기 관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일반회계에 예탁하여 이자수입을 증식하고, 이를 기금사업에 사용함으로써 기금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2016년도 전라북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제2회 변경계획(안)을 수립·작성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 주요내용

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총괄(안)

(단위 : 천원)

구 분	2015년도말 조성액(A)	2016년 운용계획			2016년도말 조성액(A+B)	비고
		수 입	지 출	증감(B)		
변경계획	350,940,647 (320,940,647)	82,137,367 (37,530,495)	87,025,339 (63,918,467)	△4,887,972 (△26,387,972)	346,052,675 (294,552,675)	
당초계획	349,210,707 (319,210,707)	55,753,518 (37,646,646)	87,825,339 (64,718,467)	△32,071,821 (△27,071,821)	317,138,886 (292,138,886)	
증 감	1,729,940 (1,729,940)	26,383,849 (△116,151)	△800,000 (△800,000)	27,183,849 (683,849)	28,913,789 (2,413,789)	

역사교과서 국정화 철회 촉구 결의안

제 출 자	이해숙·조병서·양용모·최인정·장명식 최영규·강병진·정호영·양성빈 의원		제 출 일 자	2016. 11. 17
위원회 심사	소 관 위 원 회	직접부의	회 부 일 자	
	의 결 일 자		심 사 결 과	
본회의 심의	회 차	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6. 11. 22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6. 11. 23		이 송 기 관	청와대 등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교육부가 조금이라도 이성과 합리성을 갖춘 집단이라면 이렇게 무지하고, 막무가 내식 정책을 추진할 수는 없을 것이다. 정권의 미래가 없는 상황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고집은 결국 그들이 노리는 장기 전략이 무엇인지 우리를 다시 분노케 한다.
- 전라북도의회는 상식과 합리성을 벗어나 출발부터 잘못된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아울러, 교육부의 이런 고집스런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이 결국 국정교과서 폐기를 넘어, 교육부의 폐지로 이어질 수 있음을 강력히 경고하며, 각 시도의회, 교육청, 교육단체, 학부모 등과 연대해 투쟁해 나갈 것임을 밝히며 결의안을 채택함.

의안번호 951

**행정사무감사 불출석에 따른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증인 전라북도교육감)**

제 출 자	교육위원장		제 출 일 자	2016. 11. 21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직접부의	회 부 일 자	
	의 결 일 자		심 사 결 과	
본회의 심의	회 차	3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6. 12. 14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6. 12. 15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2016년 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아래 제안이유와 같이 행정사무감사 증인 불출석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함

의안번호 953

제10대 전라북도의회 후반기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요청

제 출 자	전라북도의회 의장		제 출 일 자	2016. 12. 12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직접부의	회 부 일 자	
	의 결 일 자		심 사 결 과	
본회의 심의	회 차	3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6. 12. 14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6. 12. 15		이 송 기 관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상의원	소속 상임위		요청사유
	현 재	변 경	
송성환	행정자치위원회	환경복지위원회	본인희망
박재만	환경복지위원회	농산업경제위원회	본인희망

PC방 차단 프로그램에 대한 품질개선 및 선정권한의 지방자치단체 위임 촉구 건의안

제 출 자	국주영은 의원 외 8인		제 출 일 자	2016. 12. 13
위원회 심사	소 관 위 원 회	직접부의	회 부 일 자	
	의 결 일 자		심 사 결 과	
본회의 심의	회 차	3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6. 12. 14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6. 12. 15		이 송 기 관	청와대 등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제6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PC방 차단 프로그램을 매년 고시하고 있지만, 서로 상충되는 게임산업의 진흥과 규제 사무를 동일 부처에서 수행하는 구조적 한계로 인하여, 조악한 품질의 PC방 차단 프로그램이 설치, 청소년 보호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불가능한 상태임.
- 「청소년보호법」 제26조에 따른 16세 미만의 청소년의 심야시간대의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셧다운제)은 청소년들이 부모 명의로 가입하여 무용지물이 된지 오래임.
- 청소년 보호를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7항의 청소년 출입금지 시간, 제21조제2항의 연령별 게임물 등급을 준수하기 위한 최소한의 확인 수단을 제공하지 않고 있음.
-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단속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통계조차 제공하지 않고 있음.

□ 주요내용

- 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청소년 보호 규정들의 준수하고 최소한 전라북도 교육청 정보화 역기능 예방 사업 수준 이상의 기술적 안전조치와 관리적 조치를 제공하도록 품질 개선 촉구.
- 나. 품질개선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2조(권한의 위임·위탁)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PC방 차단 프로그램의 선정권한을 위임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선정한 프로그램을 고시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촉구.

군산 비안도 주민들의 교통권 보장을 위한 점·사용허가 승인 건의안

제 출 자	양용호 의원 외 12인		제 출 일 자	2016. 12. 13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직접부의	회 부 일 자	
	의 결 일 자		심 사 결 과	
본회의 심의	회 차	3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6. 12. 14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6. 12. 15		이 송 기 관	청와대 등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새만금 사업이 진행되는 20여 년 동안 비안도를 주민들은 육지와 가까워져 살기 편하고, 관광객도 많아져 지역경제도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가 컸으나, 이들의 이런 기대와는 정반대로 이들은 여객선이 없는 도서지역이 되면서 고립지역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 비록 인구 숫자는 적은 도서지역이지만,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본권이 지켜지지 않은 상태가 10년 이상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 전라북도의회는 큰 자괴감과 송구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 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등은 비안도 주민들의 교통안전과 생활권 보장을 위해 하루속히 가력항 점·사용허가를 승인해 여객선 운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설 것을 건의하고 개선을 촉구하며 건의안을 채택함.

무허가 축사 적법화 정책 개선 촉구 건의안

제 출 자	양성빈 의원 외 9인		제 출 일 자	2016. 12. 13
위원회 심사	소 관 위 원 회	직접부의	회 부 일 자	
	의 결 일 자		심 사 결 과	
본회의 심의	회 차	3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6. 12. 14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6. 12. 15		이 송 기 관	청와대 등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축산업의 규모화 및 전업화 과정에서 상당수 농가가 건축법 및 가축분뇨법을 지키지 못해 무허가로 운영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3개 부처(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합동으로 적법화 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축산농가의 현실과는 매우 동떨어져 있어 대책발표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적법화율이 미미한 수준에 그치는 실정임
- 국내 축산농가의 5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무허가 축산농가들은 복잡한 행정절차 및 과도한 비용부담으로 적법화를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유예기간인 2018년 3월 24일 이후부터 정부가 대대적인 점검을 통해 무허가 축사에 대한 사용중지 및 폐쇄명령 등의 행정적 제재를 가할 경우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임
- 더구나 현재 축산농가는 국내적으로는 부정청탁금지법의 시행, 국제적으로는 트럼프정부의 보호무역주의로 인해 대내외적으로 위기에 직면해 있어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 없이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추진하기 어려운 형편임
-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 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 환경부의 적극적이고 발 빠른 대응을 통해 농가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현실에 맞는 제도 개선과 예산 지원을 촉구함

새만금개발청장 경질 촉구 결의안

제 출 자	최훈열 의원 외 7인		제 출 일 자	2016. 12. 14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직접부의	회 부 일 자	
	의 결 일 자		심 사 결 과	
본회의 심의	회 차	3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6. 12. 14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6. 12. 15		이 송 기 관	청와대 등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새만금개발청이 삼성 MOU 체결에 직접적으로 참여한 당사자임에도 MOU 체결 무산에 무책임한 행동으로 일관함
 - 새만금 주요 이슈에 대해 새만금개발청 소관이 아니면 관심조차 두지 않고 있는 실정임
 - 새만금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고, 당초 약속한 대로 대한민국의 신성장동력을 창출할 세계적인 명품도시로 만들 방안을 제시하고 실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함

Ⅲ. 민원 접수 및 처리

1. 접수현황

○ 분야별

(2016. 11. 8 ~ 2016. 12. 14)

구분	계	행정	교육	사회	보건	환경	산업 경제	체육 관광	농축 수산	교 통	도시 계획	건 설	건 축	기 타
금 회	4		1						1	2				
2016년 누 계	31	3	5	1	5			1	2	8	1	3		2

○ 제출자별

구분	계	인 원 별					기관단체
		소 계	1인	2인~9인	10인~99인	100인 이상	
금 회	4	4	4				
2016년 누 계	31	31	29		2		

2. 처리현황

구분	계	처 리 별					처리중
		소 계	처 리	불수리	취 하	타기관 이 송	
금 회	4	4	4				
2016년 누 계	31	31	31				

3. 위원회별 처리현황(제10대)

(2014. 7. 1 ~ 2016. 12. 14)

구 분	위 원 회 별	접 수	처 리 상 황				비 고
			계	처리	계류	반려	
전회 까지	소 계	65	65	65			
	운 영 위 원 회						
	행 정 자 치 위 원 회	6	6	6			
	환 경 복 지 위 원 회	18	18	18			
	산 업 경 제 위 원 회	8	8	8			
	문 화 관 광 건 설 위 원 회	22	22	22			
	교 육 위 원 회	6	6	6			
	기 타	5	5	5			
금회	소 계	4	4	4			
	운 영 위 원 회						
	행 정 자 치 위 원 회	1	1	1			
	환 경 복 지 위 원 회						
	산 업 경 제 위 원 회						
	문 화 관 광 건 설 위 원 회	1	1	1			
	교 육 위 원 회	1	1	1			
	기 타	1	1	1			
누계	소 계	69	69	69			
	운 영 위 원 회						
	행 정 자 치 위 원 회	7	7	7			
	환 경 복 지 위 원 회	18	18	18			
	산 업 경 제 위 원 회	8	8	8			
	문 화 관 광 건 설 위 원 회	23	23	23			
	교 육 위 원 회	7	7	7			
	기 타	6	6	6			

IV. 자료요구 및 제출현황

1. 2016년 자료요구 및 제출현황(횟수별)

(2016. 11. 8 ~ 2016. 12. 14)

기관별	구 분	요 구	제 출	미제출	비 율(%)	비 고
	계	금 회	31	31		100
누 계		559	559		100	
도	금 회	31	31		100	
	누 계	471	471		100	
교육청	금 회					
	누 계	88	88		100	

2. 2016년 위원회별 요구상황(횟수별)

(2016. 11. 8 ~ 2016. 12. 14)

기관별	구 분	계	운 영	행 정 자 치	환 경 복 지	산 업 경 제	문 화관 광 건 설	교 육	특 별
	계	금 회	31		17	6	3	5	
누 계		559		136	91	59	87	149	1
도	금 회	31		17	6	3	5		
	누 계	471		129	82	59	88	81	1
교육청	금 회								
	누 계	88		7	9		4	68	

3. 제10대 의회 의원 요구 및 제출현황(횟수별)

(2014. 7. 1 ~ 2016. 12. 14)

구 분	요 구	제 출	미제출	비 고
합 계	1774	1730		
전라북도	1344	1308		
교 육 청	430	422		

4. 제10대 의회 위원회별 요구상황(횟수별)

(2014. 7. 1 ~ 2016. 12. 14)

구 분	계	운 영	행정자치	환경복지	산업경제	문화관광 건설	교 육	특 별
합 계	1774	439	250	193	315	551	13	13
전라북도	1344	402	231	182	293	226	5	5
교 육 청	430	37	19	11	22	325	8	8

5. 제10대 의회 위원회별 요구상황(건수별)

(2014. 7. 1 ~ 2016. 10. 20)

구 분	계	운 영	행정자치	환경복지	산업경제	문화관광 건설	교 육	특 별
합 계	6097	1772	692	825	877	1605	163	163
전라북도	5028	1678	652	791	799	980	64	64
교 육 청	1069	94	40	34	78	625	99	99